

의안번호	제 243 호
의 결 년 월 일	2001 년 2 월 20 일 (제 145 회)

의결사항
결 안 가 결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 출 년 월 일	2001. 2 . 13 .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3
----------	-----

제출연월일 : 2001. 2. 13.
제 출 자 : 보 은 군 수
(소관부서 : 농 림 과)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 10.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현행 제1조및제3조의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중 용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로하고, 제12조제2항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생활안정기금”으로 하는 내용임

3. 신 · 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4.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붙임 :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보은군 조례 제 호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용자금 상환능력이 있는자”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용자금 상환능력이 있는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용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자의 자녀“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생활안정기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농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에 부족한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융자대상) ① (생략) 1. ~ 3. (생략) ② 생활안정자금(이하“안정자금”이라한다.)의 융자대상은 <u>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u>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하는 가구로 한다. 1. ~ 5. (생략) ③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u>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의 자녀</u>로서 전문대학및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인 자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12조 (감독) ① (생략)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말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u>영세민생활안정자금</u> 운영상황을 매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u>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융자금 상환능력이있는자</u> 제 3조 (융자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u>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융자금 상환능력이있는 자</u> 1. ~ 5. (현행과 같음) ③ <u>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융자금 상환능력이있는자의 자녀</u>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u>생활안정기금</u>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정(1995. 9. 19 조례 제1432호)

개정(1997. 6. 5 조례 제1506호)

개정(1999. 6. 9 조례 제1582호)

개정(1999. 12. 17 조례 제16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농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용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3조(용자대상) ①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용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능어가중 소득지원 자금으로능어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능어가중 고소득·고부가가치소득원을 개발, 능어업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소득사업

②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용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창업 및 시설 개·보수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두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의 자녀로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인 자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용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용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사업 관련부서 공무원과 협의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용자 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용자한도 및 이율 등) ①가구당 용자 한도액은 소득자금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용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로 한다.

제6조(용자금 대부신청) 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용자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제8조(용자금의 상환) 용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1회 균분상환한다.

제9조(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군수는 자금을 용자받은 가구와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회계년도말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연세민생활안정자금 운영상황을 매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법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제6024호 신규제정 1999. 09. 0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10.1]]

~ 생 략 ~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生活保護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生活保護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生活保護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